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제’ 도입 필요하다.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올해 ESCO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계획과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요

2002년도 에너지이용협리화자금의 지원규모는 2001년 대비 6.1%(339억원)가 감소한 5,222억원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높고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ESCO사업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가 전년도 924억원에서 7.1%가 증가한 990억원으로 6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지원 계획중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ESCO사업의 지원범위를 집단에너지,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에너지절약형시설, 수요관리투자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2001년에 자금추천을 받고서도 예산 현액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실수요자는 2002년에도 계속하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2년 2월말까지 인출시한을 제한하는 한편 2002년 추천시에 적용받던 지침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금년 1월초부터 자금추천 및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ESCO의 자기계열사 투자시 지원자금 및 동일 투자지당 지원한도액 상향 등에 대해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도록 한 규정을 연장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둔화에 따라 다소 부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천이 취소되었더라도 사업을 다시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페널티 조항을 삭제하여 자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 ESCO로 등록된 업체수만도 16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ESCO사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ESCO 내의 분쟁 등 ESCO사업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

Special Interview

“

금년은 ‘에너지절약 성과 보증계약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ESCO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ESCO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ESCO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니다만 ESCO의 질적 문제는 등록기준 뿐만 아니라 ESCO업계에 종사하는 업계 대표들의 입찰에의 참여 정신과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진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ESCO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ESCO 협회 및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분쟁문제와 관련 현재 ESCO와 에너지 사용자간에 절약성과 배분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되어있는 ‘에너지절약사업 분쟁조정 자문위원회’를 입찰과정에서 발주처와 ESCO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 또한 동 위원회에서 중재토록 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분쟁 해결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수렴 후 관련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며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ESCO사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성과측정 및 평가지침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ESCO사와 에너지사용자간의 에너지절약효과 측정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보부족에 따른 고금리 팩토링 이용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ESCO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ESCO 신용대출,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문제 등으로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2002년 현재 7.75%)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ESCO가 고금리 금융비용에서 탈피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특화된 기술력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 성과를 ESCO가 보증하고 에너지 사용자는 투자비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향후 ESCO사업의 시장규모는 사업영역이나 투자금액 면에서 대폭 증가하여 정부의 지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ESCO업체의 부채비율 또한 증가하게 되어 ESCO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중 “에너지절약 성과 보증계약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ESCO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ESCO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ESCO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ESCO의 난립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록 후 일정기간(3년)동안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3조)을 개정중이며 등록업체는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등록기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ESCO사업의 바람직한 정착발전을 위해 ESCO와 ESCO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협회에서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직접지원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ESCO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ESCO업계를 대표한 에너지절약의 선봉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ESCO는 자체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단순 시설분야보다는 산업체의 공정기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ESCO의 시장 영역을 개척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협력함으로써 2002년은 정부와 공단, 그리고 ESCO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